

## 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위 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 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서예진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3345호

시행일자 2021. 01. 28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호(2021.01.27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・발령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음 -

## 가. 주요개정내용

-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기준 확대, 분만전감시료 급여기준 신설 등
-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
- 별지서식 연번 오기 정정(별지 20,21호 → 별지 26,27,28호)

## 나. 시행일: 2021. 2. 1.부터

다만,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, 가-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및 8-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의 별지서식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

붙임: 1. 고시 개정안 1부.

- 2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타목 1) 관련수가 적용 질의응답 1부.
- 2. 분만전감시 소아수술가산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